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시설등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 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생략)</p> <p>제2조 (면제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 동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내에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p> <p>제2조 ~ 제4조 (생략)</p> <p>제3조 ~ 제5조 (생략)</p>	<p>제1조 (현행과 같음)</p> <p>제2조 (면제대상) ①.....</p> <p>1. 당해 농 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 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공단지의 개발토지. 시설등을 동 법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분양받은자</p> <p>제2조 ~ 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 ~ 제5조 (현행과 같음)</p>